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2215 발의연월일: 2021년 4월 8일

발 의 자 : 오지훈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하남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은 물론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1년 4월 8일 ~ 4월 14일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5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 하남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 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청년"이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2. "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"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 - 3. "출자·출연기관"이란 「하남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 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
 - 2.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,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

- 3.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- 4.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종료되면 해당 계획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5조(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)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·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- 제6조(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)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직업상담·직업적성검사·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
 - 2. 구인 · 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
 - 3.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
 - 4.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
 - 5.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
 - 6.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7조(관계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·산하 기관을 포함한다)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·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8조(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청년일 자리 창출 촉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.
 - 1. 제4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 -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하남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」에 따른 하남시 일자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- 제9조(청년고용 확대) ①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 및 일자리의 질을 개선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시 출자·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10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하남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업 또는 기관·단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「하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